

#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

2680

제출년월일 : 2015. 8. 25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조례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안산시 관광 진흥을 도모

## □ 주요내용

-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: 안 제6조
- 조례 조문 정비 : 안 제2조 및 안 제7조

## □ 개정 조례안 : 붙임 1

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## 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
- 관광진흥법 제76조
- 지방재정법 제17조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

## □ 예산 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예고결과 : 붙임 4

- 예고기간 : 2015. 6. 24. ~ 7. 14.(20일)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 5
- 방침문서 : 붙임 6

## [붙임 1] 개정 조례안

###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중 “관광진흥법” 을 “법” 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관광 관련 법인,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

5.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 · 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

② 보조금의 신청 · 지급 ·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 에 따른다.

제7조 제1항 중 “개인” 을 “관광사업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” 를 “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관광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관광과장 최 경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관광정책계장 박 종 흥
	담당자 성명·전화	임 병 혁 (행정 3059)

[불임 2] 신·구조문 대비표

**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“여행업자”란 <u>관광진흥법</u>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.</li> </ol>	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법 -----.</li> </ol>
<p><b>제6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지원 등)</b> ① <u>시장은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/ol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(생략)</li> </ol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, 규모,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<b>제6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지원 등)</b> ① <u>시장은 관광 관련 법인,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u>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</u></li> <li>5. <u>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·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</u></li> <li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li> </ol> <p>② <u>보조금의 신청·지급·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p><b>제7조(관광사무의 위탁)</b> ① <u>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	<p><b>제7조(관광사무의 위탁)</b> ① -----.</p> <p>----- 관광사업자 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- 「<u>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</u>」 -----.</p>

#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680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9월 15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제안이유

-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수정함.

## 주요내용

- 제6조제1항 중 '관광관련 법인, 단체'를 '관광관련 법인·단체'로 수정하고, 같은 항에 '지역'이란 용어를 '관내지역'으로 명확히 명시함

## **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‘법인, 단체’를 ‘법인 · 단체’로 하고 ‘지역’을 ‘관내 지역’으로 수정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)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6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) ① 시장은 관련 법인,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<u>지역</u>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6조(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) ① 시장은 관련 법인 ·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<u>관내지역</u>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